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2. 23.

이강일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 12.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2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30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2. 15.)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1차 정무위원회 (2025. 12.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강일의원)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9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함. 허나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 외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지 아니함.

타 상호금융기관의 법례를 살펴보면, 농협·수협은 부이사장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21년도에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 역시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조직 운영의 절차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경미한 위반에도 임원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음.

농협·수협 등 타 상호금융기관은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 이를 고려하여 본 개정안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상호금융기관 간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고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다만 보궐선거로 선

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되며, 단기인 재임 기간도 연임 횟수에 포함됨. 이는 조합이 보궐선거에서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이사장이 겪는 재임 기간 단축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정 명 호)

가. 부이사장직 폐지

□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고, 이 폐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등).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투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제1항제2호의 사항: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선거인(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이사장은 ----------, 이사장을 ----------. ----------.
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	제27조(임원) ① ----------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이사장의----------

현 행	개 정 안
의 투표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이사장을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 ⑬ (생 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1]에 따라 조합에는 부이사장 1명을 필수로 두어야 하며, 부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됨.

□ 그런데, 현행법상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1 순위 직무대행자[2]라는 점 외에는 그 역할이나 권한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직무대행자가 반드시 부이사장이라야 하는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부이사장직을 폐지할 필요

1) **「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2) **「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임원)**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조합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선거 비용 등을 절감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과 같이 부이사장직을 폐지하는 것은 조합의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3]에서도 부이사장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상호금융기관별 임원 정수 비교 >

구분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임원 정수	<이사>			
	5~9인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포함**)	7~25인 (조합장 1인 포함) ***부이사장 없음**	7~11인 (조합장 1인 포함) ***부이사장 없음**	7~15인 (이사장 1인 포함) ***부이사장 없음**
	<감사>			
	2~3인	2인	2인	3인 이하
관련 근거	신협법 §27①	농협법 §45①	수협법 §46①	새마을금고법 §46①

(자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 금융위원회 역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역할은 부이사장 외에 다른 임원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부이사장직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새마을금고의 경우 2021년에 부이사장직을 폐지함.

나. 2023년 11월 이전 보궐선거 당선 이사장의 연임 제한 완화

□ 개정안은 2023년 11월 이전에 임기 2년 미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사장의 경우 해당 임기를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8항 제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 ⑦ (생 략) ⑧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⑨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1.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 2. 2023년 11월 21일 이전 임기 2년 미만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⑨ (생 략)

□ 현행법 제31조제1항·제2항[4]에 따르면 조합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5]할 수 있는데,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사장의 임기 역시 그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연임횟수에 포함됨.

□ 그런데, 2023년 7월에 선거관리의 효율성[6] 등을 위해 이사장 동시선거제가 도입(개정법률 시행일: 2023년 10월 18일)되면서, 이 동시선거일[7]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임기가 단축되는 이사장의 해당 임기를 연임제한 횟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마련되었음.[8]

□ 개정안은 2023년 11월 이전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사장의 경우,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이사장이나 동시선거로 인한 연임횟수 제외 특례에 해당하는 이사장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

---

4) **「신용협동조합법」제31조(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두 차례 연임 경우 총 12년간(**4년** + **제1차연임**(4년) + **제2차연임**(4년)) 연속 재임하게 됨.

6) 2023년 7월 법률 개정 시에 조합 이사장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의무화도 함께 규정되었는데, 조합 이사장 선거관리를 맡게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경감하고 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시선거제도 함께 도입되었음.

7) 제1차동시선거일: 2025년 11월 12일, 제2차동시선거일: 2029년 11월 14일, 이후 동시선거일: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부칙 제4조제3항)

8) **「법률 제19565호 신용협동조합법, 2023. 7. 18.」부칙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2019년 11월 2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되거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④ 2023년 11월 22일 이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2023년 11월 2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1. 제7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2. 제55조에 따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조합
⑧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려해 발의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조합 이사장 동시선거로 인한 연임횟수 제외 특례를 동시선거로 인해 임기가 단축되는 이사장 외에 2023년 11월 이전에 임기 2년 미만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사장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조합 이사장 간의 연임 횟수 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전에 단축된 임기를 인지하고 선거에 출마한 보궐선거 당선 이사장과 법률 개정에 따른 동시선거 실시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기가 단축된 이사장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임횟수 제외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역시 보궐선거 임기를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고 있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 완화

□ 개정안은 조합 임원·발기인 및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9]에서 ①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②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생 략)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형---------- 4. (현행과 같음) 5. 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

9) **「신용협동조합법」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하 생략)

②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⑦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의2.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8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28조 및 제28조의2----------.

1)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외

□ 현행법은 조합 임원·발기인 및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로서 '실형' 및 '선고유예[10]'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한 반면, '집행유예'에 대하여는 그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11]

10) **「형법」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1)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

□ 그런데, 2016년 「형법」 제62조[12]가 개정되어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정상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벌금형의 유형별 결격사유 해당 여부 >

구 분	현 행	개정안
벌금형 (실형)	×	×
벌금형의 집행유예	○	×
벌금형의 선고유예	×	×

□ 개정안은 집행유예 중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받은 자와 정상참작이 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간의 불균형을 정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 참고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 등도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13]

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2)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유예 관련 타 상호금융업권의 임원 결격사유 비교 >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3)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2)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에서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제외

□ 현행법 제27조의2[14]는 임원 선거운동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99조제3항[15]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확정된 형이 벌금형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관계없이 임원 등의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16]에 해당하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원 등이 될 수 없음.

□ 반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선거범죄 관련 결

---

14) **「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신용협동조합법」제99조(벌칙)**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신용협동조합법」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 4. (생 략)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하 생략)

② 임원에게서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

격사유(당연퇴직사유) 기준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며, 형 집행 후 3년 또는 4년이 경과하면 임원 등이 되는데 제한사유가 되지 아니함.

<상호금융기관별 선거범죄로 인한 결격사유 해당 기준>

구 분	신용협동조합		농업 협동조합 17)	수산업 협동조합 18)	산림 조합19)	새마을 금고20)
	현행	개정안				
결격사유 해당기준	액수 무관	100만원 이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 벌금형			
형 집행 후 숙려기간	5년	4년	4년	4년	4년	3년
벌금형 분리선고	X	○	○	○	○	○

□ 개정안은 조합 임원·발기인 및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에서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 집행 후 숙려기간을 종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법」 제38조21)에도 불구하고

17) **「농업협동조합법」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수산업협동조합법」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9. 제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지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9) **「산림조합법」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9.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 **「새마을금고법」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1) 현행 「형법」은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함.
「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금융위원회 역시 선거범죄 관련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 기준 및 경합범에 대한 분리선고 관련 사항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임.

---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